

## 제재내용 공시

1. 조합명 : 영덕북부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2. 10. 19

3. 제재조치(요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 직원	변상 : 3명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사실

○ **대손판정 불인정으로 인한 손실 발생**

- 1급 권○○ 외 2인은 2018. 03. 23. 차주 이○○의 금융어업자금대출 10,000천원 취급 시 차주의 어선원보험료의(6,447천원)의 체납으로 인해 차주의 선박에 2018. 03. 16. 압류 명령이 등재되었으며 이는 당연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압류명령을 해제하고 대출을 취급했어야 함에도, 차주의 체납된 어선원보험료 중 일부인 2,825천원만 납입하고 압류명령 해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대출기간 중 압류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8. 04. 05. 체납된 나머지 어선원보험료 3,622천원을 추가납입하여 압류명령을 해제하였다. 또한 2021. 08. 26. 해당 채권이 연체되어 대손보전 신청하였으나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자(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으로 인하여 전액 불인정 판정되어 조합에 10,000천원의 손실을 초래함

< 관련법규 >

1. 「농림수산업정책자금대손보전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1절 제1호(목적과 설치근거), 제2편 제2장 제2절 제2호(대출취급의 적정성 심사)
2. 「수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3.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 제4편 제46조(기업자금 (사업자등록 있는 어업인의 수산자금 포함)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조합명 : 영덕북부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2. 10. 19

3. 제재조치(요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 직원	경고 : 2명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사실

○ 체크카드 재발급 업무처리 소홀

- 2급 윤○○ 외 1명은 2019. 3. 14. 회원 김○○의 체크카드 재발급 시 회원으로부터 회원 제신고서에 의한 재발급 신청을 받아야함에도, 회원 본인이 아닌 회원의 배우자가 작성한 제 신고서(체크카드 가입신청서 등)에 의해 재발급 신청을 받고 회원 명의 체크카드를 재발급함

< 관련법규 >

1. 「체크카드 회원규약」 제8조(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카드업무방법」 제28조(카드의 재발급), 제163조(정의), 제166조(회원의 자격)

1. 조합명 : 영덕북부수협

2. 제재조치(요구)일 : 2022. 10. 19

3. 제재조치(요구)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 직원	경고 : 4명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

4. 제재대상사실

○ 우량고객 우대대출 취급 소홀

- 1급 천○○ 외 2명은 2019. 1. 7. 차주 김○○에게 우량고객 우대대출 16,000천원을 취급하면서, 신용정보조회 결과 차주는 3개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총 7,400천원을 이용한 내역이 있어 신용대출 취급제한 규정에 해당하여 우량고객 우대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2019. 10. 8. 같은 차주 김○○에게 우량고객 우대대출 39,000천원을 취급하면서, 신용정보조회 결과 차주는 2개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총 5,800천원을 이용한 내역이 있어 신용대출 취급제한 규정에 해당하여 우량고객 우대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함

< 관련법규 >

1.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87조(채무자 자격제한), 제5편 제588조(우량고객의 기준)